평창군 청·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60 제출년월일 : 2018. 11.

제 출 자: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효율적인 일자리정책 업무 추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·운영 근거 마련 및 일자리 창출·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안 명칭변경(제명)

- 기존 : 『평창군 청·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』

- 변경 : 『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』

나. 일자리 창출지원·취업지원 사업 신설(안 제5조, 안 제6조)

다.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신설(안 제7조)

라. 행정·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)

마. 재정지원 사업자 실적보고, 검사·감독, 취소·반환 사유 신설(안 제11~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8. 9. 21. ~ 2018. 10. 11.) 결과, 제출의견 없음.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의견 있음(반영)
 - 제5조(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) 및 제6조(취업지원 사업) 청년·여성· 고령자 등에 관한 지원 추가
- 5) 조례 · 규칙심의회 : 수정의결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청・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청·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일자리 창출"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·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취업 지원"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.
- 3. "취약 계층"이란 학력·경력의 부족, 육체적·정신적 장애, 실업의 장기화,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.
- 제3조(군수의 책무)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

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,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)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.
 - 1.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
 - 2. 청년 창업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
 - 3.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자활기업 등 육성 지원
 - 4.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
 - 5. 청년·여성·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
 - 6.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
 - 7.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
 - 8.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6조(취업지원 사업)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.
 - 1. 구인·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
 - 2.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
 - 3.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

- 4. 청년·여성·고령자 등의 취업지원 사업
- 5.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7조(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 - 1. 취업 상담 및 알선
 - 2.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관련 행정적 · 재정적 서비스 홍보
 - 3.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
 - 4.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- ②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수 있다.
- 제8조(행정·재정지원 등)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
 - 2.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·교육·홍보
 - 3.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와 사업비
 - 4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업이나 지원활동으로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
 -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9조(관계기관·단체와의 협력 등)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 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

- 관·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.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
- 제10조(업무의 위탁)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, 비영리단체 또는 군 출자·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를 따른다.
- 제11조(실적보고 등)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실적,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사업이 완료된 때
 - 2. 사업의 폐지·중단을 승인 받은 때
 - 3.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
- 제12조(검사·감독)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 원으로 하여금 장부, 서류,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 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- 제13조(재정지원의 취소 및 반환)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여,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.

- 1.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 하였을 때
- 2.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
- 3.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
- 4.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- 5.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
- 6. 제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 한 경우
- 7.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14조(포상)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이 나 기관·단체 등을 선정하여 「평창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 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고용정책 기본법

- 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)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·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·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·전망에 관한 조사·공표에 관한 사항
 - 2.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·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
 - 3. 근로자의 실업 예방,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
 - 4. 산업 · 직업 · 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 - 5.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·직업지도·직업훈련,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
 - 6. 학력·경력의 부족, 고령화, 육체적·정신적 장애, 실업의 장기화, 국 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 이 특히 곤란한 자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등 (이하 "취업취약계층"이라 한다)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
 - 7.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, 인력의 확보,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
 - 8.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
 - 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, 장려금,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
 - 10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(求人者)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, 직업소개·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(이하 "고용서비스"라 한다)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

- 11.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
-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,경제·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,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,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소개,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.

지방재정법

-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 -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 - 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 - 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 - 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[붙임 2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김명기
연락처	(033) 330 - 2210